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9월30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김 대 환
노동부장관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설립”을 “설립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기업”을 “회사”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사업주”를 “회사”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조합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실에 관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계회사)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로 한

다.

1. 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2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근로자인 주주에 한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2.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1호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조합원”을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총회를”을 “3주 이내에 총회”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조합기금”을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이하 “조합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함에”를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 배정 및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부여에”로 하고, 동조제5항중 “기업”을 “회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조합원에 귀속한다.”를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사업주”를 “회사”로 하며, 동항제2호중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을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주식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되, 동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 전에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중 당해 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수를 포함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법 제32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속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③법 제32조의2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④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당해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계약의 주요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의 이행기한
 -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7.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 ⑤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 1. 당해 회사가 파산·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제4항제7호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⑥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⑦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제공기간을 6월 또는 1년의 단위기간으로 분할하여 단위기간별로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제공기간의 말일 또는 단위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⑧조합원의 행사기간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수량은 당해 제공기간에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수량을 균등하게 분할한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사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한 수량은 이를 이월할 수 없다.
- ⑨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⑩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⑪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조합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의3(조합차입) ①법 제3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금융기관
 -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 ②조합은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차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사와 조합간에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미리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2. 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내이어야 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제3호에 의한 당해 차입금의 차입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을 곱한 금액 이내일 것
 - 3.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잔여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4. 차입금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할 것
- 제18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조합의 자사주 취득)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조합의 자사주 배정) ①조합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사주는 취득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 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과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나.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다.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
 - 2.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및 당해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보유한

후 차입금이 상환된 때에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즉시 개인
별계정에 배정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보
유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에 합
산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
함에 있어 당해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일 전
에 정년예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게도 자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사주의 예탁기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사주 및 법 제35조
제1항제1호·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
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1년
3.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1
년
4.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재원중 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로서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 : 1년

5.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로서 제1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 : 1년

6.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 :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자사주의 잔여예탁기간. 다
만, 무상증자 신주교부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예탁기간이 3월 미만
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중인 자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예탁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21조(자사주의 인출)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
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자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자사주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하며,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예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

제22조 본문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조조합기금”을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기금”으로, “차입금 상환”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지급”으로, “상환금액”을 “상환금액 및 이자지급액”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당해 회사 주식”을 “자사주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사업주”를 각각 “회사”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사주중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제외한다.

1. 조합이 법 제3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24조제4항중 “법 제37조제3항”을 “법 제37조제4항”으로, “제21조제2호 내지 제6호”를 “제17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7조제4항”을 “법 제37조제5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비상장·비등록주식”을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당해 주식을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비상장·비등록법인”을 “비상장법인”으로, “사업주”를 “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업주”를 “회사”로, “각호의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결과를”을 “각 호의 평가가격”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회계법인”을 “회계법인의 평가가격”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평가가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격

제27조의 제목중 “보고”를 “보고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39조”를 “법 제39조제1항”으로 하여 동 본문을 동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2. 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당해 관계회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자사주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기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우리사주조합”을 “조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27조”를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

별표 위반행위란 제2호중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5호”를 “법 제3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조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다목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고, 제6조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8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4조제1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37조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배정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에 관하여는 당해 가배정주식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무상증자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

유증인 자사주의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②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무상증자 주식은 당해 가배정된 주식의 가배정일에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탁기간을 적용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이유

주가변동에 따른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위험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고, 우리사주 취득이 어려운 주권비상장법인 및 코스닥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469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관계회사의 범위(영 제11조의2 신설)
-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 취득방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관계회사의 범위를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함.
- 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시 행사가격의 할인(영 제17조의2 제6항 신설)
- (1)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행사가격을 정하려는 것임.
 - (2)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의무예탁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부여 당시 시가에서 최대 100분의 2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3)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여 재산형성 및 노사안정에 기여하고,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로 기대됨.

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연간 부여한도(영 제17조의2제9항 신설)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연간 부여한도를 정하려는 것임.
- (2) 근로자의 평균임금 등을 감안하여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함.
- (3) 연간 부여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근로자가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주주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도록 함.

라. 우리사주 배정방법의 개선(영 제19조제1항)

- (1) 회사나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으로 가배정한 후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조합원에게 이익이 즉시 배당되지 않아 우리사주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고 절차가 복잡한 문제점이 있음.
- (2) 회사나 주주가 출연한 자사주는 취득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도록 함.

(3) 자사주에 대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이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되고, 자사주의 배정절차도 간소화됨에 따라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유·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개선(영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 (1) 개인별계정에 예탁중인 자사주의 유·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새로이 1년간 의무예탁을 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2)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원주식의 잔여예탁기간만 예탁하도록 하되, 잔여예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이 선택적으로 예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화함.
- (3) 유·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임의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조합원의 권리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비상장법인의 환매수를 위한 주식평가방법 개선(영 제26조

제2항)

- (1)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시 환매수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2개로 제한되어 있어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고액의 수수료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음.
- (2) 우리사주 수탁기관도 환매수 가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스스로도 주시가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추가함.
- (3) 환매수 가격 평가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환매수 가격의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9월30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오 영 교

●대통령령 제19075호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 중앙인사위원회가 수집·관리하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공직후보자의 성명, 연령, 전문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업무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각종 평가결과 등 공직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한한다.

제4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19조의3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보내주도록 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그 정보를 인사상